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5

# 서 울 고 등 법 원

## 춘 천 제 2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춘천)2016누631 입회금자료제출명령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492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16.

판 결 선 고 2017.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권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 결과 제출명령을 취소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5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1)항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7째줄부터 6쪽 18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시행령이 위헌 ·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는 세무공무원에게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자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조사상 필요한 때에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조사결과를 제출하라.'라는 요구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상의 처분, 그것도 재량처분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5

이러한 재량처분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의 회원 중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한이 연장된 회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므로, 결국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이 위헌 · 위법으로서 무효이면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위헌 · 위법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 위법 여부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위헌 ·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취득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사실상 존속기한 연장을 새로운 취득이라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이 연장되는 모든 경우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5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시행령 규정은 그와 같이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시행령 개정 이후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입회기간이 긴 회원권은 만기연장의 횟수가 적게 되므로 적은 취득세를 내게 되고, 입회기간이 짧은 회원권은 만기연장의 횟수가 많아서 더 많은 취득세를 내게 되는 상황은 '취득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것이냐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이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5

판사 박병규

판사 이희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5

(별지)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⑪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5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끝.